

감사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금강대학교)의 2009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 (대재81423- : 2003. 2.)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금강대학교(금강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내용 명시)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해당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지적사항 없음
4. 부속병원 관련				해당사항 없음
계				

2010년 4월 7일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감사 전준모 (인)

감사 한인수 (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외부 회계감사 : 제405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공인회계사 권오진
(충남 아산시 온천동 1556)

피감사 기관장

2010년 4월 7일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 김영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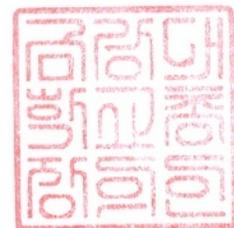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2010년 4월 7일

금강대학교

총장 성낙승



사학기관 감사증명서

1. 학교법인	①학교법인명	금강대학교	②이사장 성명	김 영 춘
	③소재지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④전화번호	041)731-3303	⑤FAX	042)731 -3305
	⑥회계연도	(2009)회계연도 :2009년 3월 1일부터2010년 2월28일까지		
2.설치·경영 대학교	⑦대학교명	금강대학교	⑧총장 성명	성 낙승
	⑨소재지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⑩전화번호	041)731-3114	⑪FAX	041)731-3048
	⑫입학정원	100 명	⑬기타 동 법인 설치 ·경영 학교명	해당사항없음
3.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구 분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요약(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⑭감사의견 ⑮한정사항 ⑯특기사항 ⑰기타⑮⑯이외 의 중점확인사 항 관련 위반사 항	적 정 의 견			
사립학교법 제31조제4항, 제5항,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거 회계감사기준 및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증명서를 제출합니다.				
2010 년 3 월 19 일				
(외부감사인이 회계법인인 경우) 제405호 공인회계사 감사관 공인회계사 권 오 진 (인)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 김영춘귀하				
첨부서류 :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받은 재무제표 첨부) 및 외부 감사결과 집계표 등(별지 제3호~제3의 1호-5호 및 제4호~제6호 서식)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이사장 및 이사회 귀중

2010년 3월 19일

본 감사인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의 일반업무회계 및 그 부설학교인 금강대학교 교비회계의 2010년 2월 28일과 2009년 2월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회계연도의 운영계산서 및 자금계산서, 그리고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일반업무회계와 그 부설학교인 금강대학교 교비회계의 2010년 2월 28일과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합산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회계연도의 합산운영계산서 및 합산자금계산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경영자에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중대하고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및 그 부설학교인 금강대학교의 재무제표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서 정한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회계처리방법은 발생주의에 따라 수익·비용 인식을 하지 아니하고,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상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인

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그 회계처리방법이 상이합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재무제표는 학교법인 금강대학교와 그 부설학교인 금강대학교의 2010년 2월 28일과 2009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회계연도의 운영성과 및 자금수지내용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 온천동 1556

제405호 공인회계사 감사반

공인회계사 권 오 찬

공인회계사 한 근

공인회계사 김 대 환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일(2010년 3월 19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및 금강대학교의 재무제표 그리고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일반업무회계와 금강대학교 교비회계의 합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